

第17回 鎭龍市議會第1次定例會

2005. 7. 15.

審 查 報 告 書

- 2004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
-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豫算決算特別委員會

2004年度 歳入・歳出 決算 承認의 件 審 査 報 告

1. 심사 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29. 계룡시장
- 회부일자 : 2005. 7. 4.
- 상정일자 :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5. 7. 7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세입예산현액 118,948,361천원에 수납액 123,500,286천원(103.8%)
- 나. 세출예산현액 118,948,361천원에 지출액 67,875,879천원(57.1%)
- 다. 기금결산액 155,018천원(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등3건)
- 라. 채권결산액 38,007,371천원, 채무결산액 44,125,000천원
- 마. 공유재산액 1,478천㎡ 88,780,608천원, 물품결산액 262개 2,199,327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☐ 2004년도 세입·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

-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,189억 4,836만 천원이며 예산액의 103.8%인 1,235억 28만 6천원이 수납되었고, 예산액의 57%인 678억 7,587만 9천원이 지출되었으며, 세입액의 45.0%인 556억 2,440만 6천원이 잉여금임.

-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,
-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□ 구체적으로는,

- 2004년도 세입·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대비 17.4%인 207억 1,642만 3천원으로, 이는 2003년도 세입·세출결산의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비율인 17.3%보다 0.1% 증가한 것인데,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지방세 등 세입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,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,
- 세입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없이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의 경우, 징수결정액대비 88.4%인 11억여원이나 미수납된 바,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,
-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163억여원이 발생하고 있는바, 이는 예산현액대비 13.7%에 이르고 있는데, 이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우리시의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의 경우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바람직해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—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— 생 략

6. 심 사 결 과

— 원 안 가 결(재석위원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

—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— 없 음

2004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審 査 報 告

1. 심사 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29. 계룡시장
- 회부일자 : 2005. 7. 4.
- 상정일자 :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5. 7. 7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예비비 지출 총괄

- 예 산 액 : 4,488,752,000원
- 지출결정액 : 394,562,000원
- 지 출 액 : 307,641,820원
- 이 월 액 : 70,619,000원
- 집 행 잔 액 : 16,301,180원

나. 예비비 지출 명세

- 접는 중계 물탱크구입 등 6건 : 307,641,82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계상하고,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2004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은 2004년 3월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지원(2건) 및 공공근로사업비(1건)와 폭설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간접비(2건)와 취약지역산불예방시범추진을 위한 접는 물탱크구입(1건)이며,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것으로,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—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— 생 략

6. 심 사 결 과

— 원 안 가 결(재석위원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

—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— 없 음